

국무조정실 공고 제2019-26호

## 국무조정실 · 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(운전원)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19년 3월 18일  
국무조정실장

### 1. 선발개요

채용구분	인원	주요담당업무	근무예정부서
기간제근로자	0명	업무용 차량 운전 및 관리 등	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(서울특별시)

### 2. 근무조건

- 계약기간 : ~ '19. 12. 31까지
- 보 수 :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내부 운영지침에 따름
  - 2019년 국무조정실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및 수당
    - ※ 월 175만원 내외
    - ※ 4대 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의무가입  
(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)
- 근무지 : 서울
- 근무시간 : 주 5일, 1일 8시간

### 3.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(기준 :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)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,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**제33조(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(2001. 12. 31. 이전 출생한 자)
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
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)

#### ○ 필수자격요건

-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이며, 1종 또는 2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
  - ※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(면허정지나 면허정지예정자는 응시불가)
  - ※ 자료를 통해 증빙된 운전경력만 인정함

#### ○ 우대요건 (서류전형 단계)

-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 후 사업등록이 된 회사 등(국가기관, 지자체, 공공기관 포함)에서 운전경력이 6월 이상인 자

## 4. 시험방법

### ① 1차시험 : 서류전형

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공고된 채용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
※ 서류심사 기준 : 자기소개서, 관련 분야 근무경력 등

### ② 2차시험 : 면접시험

※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·중·하로 평가

※ (평정요소) ① 국가기관 근무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
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·품행·성실성 ⑤ 창의력·의지력·발전가능성
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

※ (최종합격자 결정)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"하"로 평정 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"하"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, "상"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

## 5. 채용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모집공고	'19.3.18(월)~'19.3.25(월)	▪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
원서접수	'19.3.21(목)~'19.3.25(월)	▪ 국무조정실 인사과 채용담당자 (우편, 방문, 전자우편)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'19.3.27(수) 예정	▪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
면접심사	'19.3.29(금) 예정	▪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별도 상세 공고
최종합격자 발표	'19.4.3(수) 예정	▪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

## 6. 원서접수

- ① 접수기간 : '19. 3. 21(목) ~ '19. 3. 25(월)
  - ② 접수방법 :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접수
  - ③ 원서접수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(어진동)  
정부세종청사 1동 313호 국무조정실 인사과
  - ④ 전자우편 : chapter87@korea.kr
- ※ 응시원서는 **접수기간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**에 한하여 유효함

## 7. 제출서류

- ① 응시원서 1부 : 【별지서식 1】
- ② 자기소개서 1부 : 【별지서식 2】
- ③ 자격증 사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 : 【별지서식 3】
- ④ 경력증명서 1부 (해당자에 한함)
  - ※ 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
  - ※ 근무기간(연월일), 직위, 담당업무, 운행차종(인승), 상근여부 등 반드시 기재
  - ※ 비상근 근무시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 (예: 주당 30시간)
  - ※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(하단에 별도 기재 가능)
  - ※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
  - ※ 재직증명서 제출 시,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('19.3.29.) 기준
- ⑤ 운전경력증명서 1부 (전체 운전경력 포함)
  - ※ 공고일 이후 경찰서 및 민원24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
  - ※ 운전면허경력, 법규위반, 교통사고 : 전체기간 조회
-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(남자만 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제출, 외국인 제출 불필요)
- ⑦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: 【별지서식 4】

### ※ 서류제출 주의사항

- 가. 제출 서류 중 ①, ②, ⑦번 서류의 경우,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 
(반드시 서명된 컬러스캔파일을 제출)
- 나. 응시원서에 작성한 이력사항 중 ③~⑥의 서류에 의해 증빙되지 않은 사항은  
심사 시 불인정
- 다. 모든 제출서류는 응시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

## 7. 유의사항

- ①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  -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②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③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④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, 신원조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⑥ 근로계약포기, 합격취소,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인사과(☎ 044-200-280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